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 재정정책과 복지재원조달

## *Fiscal Policies on Racing and Social Expenditure Financing*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997년 4조원이던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2008년 16조원으로 4배나 증가하면서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매출은 증가하여 2010년 총매출액은 16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경마는 매출액의 규모면에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약 46%(2008년 기준)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경마의 총매출액은 2000년 약 4조 6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약 7조 5천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마, 경정, 경륜, 로또 등의 사행산업은 도박성 및 중독성이 있는 산업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산업이므로 조세를 통하여 사행산업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세수는 저소득층 지원 및 보건분야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경마, 경정, 경륜, 로또 등의 사행산업은 도박성 및 중독성이 있는 산업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산업이지만, 매출규모가 최근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왔다. 1997년 4조원이던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 규모가 2008년 16조원으로 4배나 증가하면서 도박중독 등 사행산업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행산업 매출은 증가하여 2010년 총매출액은 16조 6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경마는 매출액의 규모면에서 전체 사행산업 매출액의 약 46% (2008년 기준)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경마의 총매출액은 2000년 약 4조 6천억원에서 2010년에는 약 7조 5천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향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경마는 경주마의 소유자와 경주마 생산자 등 경마산업으로서의 특성이 일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도박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다. 국내산 경주마 생산 장려, 경마를 도박이 아닌 건전한 레저 활동으로 간주하는 시각에 따라, 경마를 레저산업으로 간주하여 지역기반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시각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경마에 부과되던 마권세도 그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2001) 하였다. 하지만, 경마 산업을 레저산업으로만 간주하기에는 중독성 및 도박성의 폐해들이 지나치게 크다.

경마 등 사행산업은 중독성이 있어 제어가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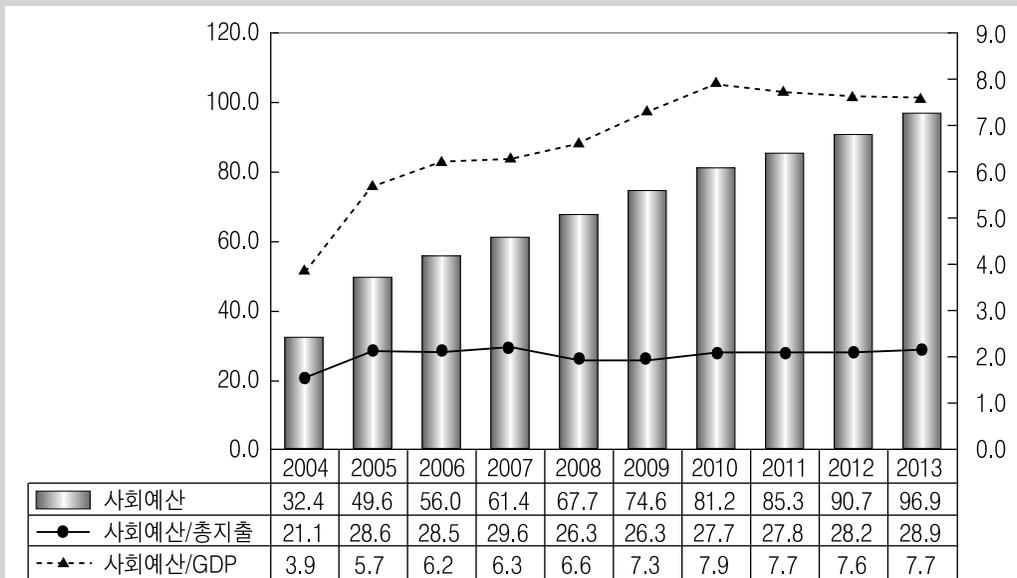
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를 추구하다가도 이후에는 자신의 소비를 후회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를 통하여 사행산업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적 세수는 저소득층 지원 및 보건분야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년간 복지예산의 변화추이를 보면, 복지예산증가율(15.7%)은 일반예산증가율(8.8%)의 1.78배를 유지하여 왔다. 2010년 보건복지예산은 약 81조 2억 원으로, 역대 정부 재원배분 중 가장 높은 수준(27.75%)을 기록하고 있다. 중기재정계획을 살펴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 복지지출 연평균 증가율(6.8%)

은 정부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4.2%)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다. 보건복지지출은 약 89%가 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에도 보건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 상태로 보아서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건복지지출을 감당하기는 벅찰 것으로 보여지며,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심화 등으로 인한 현 수준의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힘겨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마등 사행산업재정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1. 사회예산의 추이 (2004~2010)

(단위: %, 조원)



주: 2009~2010년 GDP는 잠정치(한국은행)이며, 2011~2013년 GDP는 정부의 잠정치(국가재정운용 계획임).  
 자료: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년도; 대한민국 정부(2009),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ecos.bok.or.kr>)

# 1. 경마, 경륜, 경정사업 재정정책의 현황

경마산업의 총매출액은 2000년 약 1조 3천 억원에서 2008년 약 2조로 연평균 5.06% 증가 하여왔다. 순매출액은 2000년 약 1조 3천억 원에서 2010년 약 2조로 연평균 4.42% 증가하여 왔다. 총매출액중 73%는 환급금으로 지출되고, 11%는 경주개최비용과 수익금이며, 나머지 매출액은 조세납부분이다. 수익금중 이익 준비금(10%)와 경마사업확장적립금(30%)를 제외한 부분은 축산발전기금(48%)과 농어촌 복지사업(12%)에 쓰인다. 경륜,경정의 경우도 환급금 72%, 경주개최비용과 수익금 12%로 유사한 지출구조를 보이고 있다. 경륜, 경정사

업의 경우는 수익금의 40%가 체육진흥기금으로, 30%가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가고, 17.5%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으로, 10%는 지방재정지원과 2.5%가 공익사업지원에 쓰이고 있다.

경마에는 마권매출과 입장권에 대하여 각각 조세가 부과되고, 환급금에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마권매출에는 지방세인 레저세, 주민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국세로서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고 있다. 환급금에는 100배 초과 배당 시 기타소득세 20%가 부과된다. 입장권에는 국세로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경마산업의 조세 및 기금수입은 약 1조 6,732억원 (2008년)으로, 지방세 수입이 약 1조 1,207원, 국세 수입이 2,904억 원, 기

표 1. 경마산업 매출액

(단위: 억 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예상	연평균 증가율
총매출액	46,229	60,163	76,491	61,730	53,303	51,548	53,110	65,402	74,219	73,105	75,726	5.06%
순매출액	13,187	17,236	21,093	17,045	14,811	14,347	14,758	18,181	20,648	19,611	20,333	4.42%

자료: 2008년 사행산업 현황(2008) 재인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0.3.3.보도자료

표 2. 경마산업의 조세 및 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조세	국세	4,31382	266,909	302,637	289,064	174,796	171,387	197,763	250,115	290,438
	지방세	473,521	979,618	1,247,283	1,010,198	866,203	837,206	863,189	1,066,879	1,206,697
기금		135,100	160,800	240,300	152,200	112,700	99,000	95,400	134,500	176,100

자료: 2008년 사행산업 현황(2008) 재인용.

금이 1,761억 원이다. 경마산업의 조세 및 기금 수입에서는 지방세가 약 8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행산업과 유사하게 소비의 부정적

외부성을 가진 담배, 주류등 재화도 지방세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이러한 외부불경제 품목들에 대해 부과되

표 3. 경마, 경정, 경륜사업 재정의 지출구조

경마			경륜·경정		
환급금(73%)			환급금(72%)		
제세 <sup>1)</sup>	마권매출관련	국세 지방세	제세 <sup>2)</sup>	마권매출관련	국세 지방세
	입장권관련	국세		입장권관련	국세
수득금 (11%)		경주개최비용 수익금	수득금 (12%)		경주개최비용 수익금
↓			↓		
이억준비금(10%)			체육진흥기금(40%)		
경마사업확장적립금(30%)			청소년육성기금(30%)		
축산발전기금(48%)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자금(17.5%)		
농어촌복지사업(12%)			지방재정지원(10%)		
			공익사업지원(2.5%)		

주: 1) 경마, 경륜 및 경정에서 부과되는 국세 및 지방세는 다음 <표 2>와 같다.

2) 경마의 제세와 세금부과 비율이 동일함.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년 사행산업 현황」,

표 4. 경마관련 조세

세목	산출방법	관련법령	납부금액		
			2007년	2008년	
마권 매출 관련	레저세	마권매출액의 10%	지방세법 제 154조	6,540	7,422
	지방교육세**	레저세의 120분의 40	지방세법 제 260조의 3	3,924	4,453
	농특세	레저세의 20%	농어촌특별법 제 3조	1,308	1,484
	기타소득세	100배 초과배당시 환급금의 20%	소득세법 제 21조	682	737
	기타소득주민세	기타소득세의 10%	지방세법 제 173조	67	73
입장권 매출 관련	개별소비세	1인당 500원	개별소비세법 제 1조	17	20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교육세법 제 3조	5	6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등을 포함한 입장수입의 10%	부가가치세법 제 1조	2	3
			12,545	14,198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년 사행산업 현황」,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는 세금이 대부분 지방세로 존속될 필요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2. 경마, 경정, 경륜 등에 대한 조세부과의 타당성 및 문제점

경마, 경정, 경륜, 복권, 카지노 등의 사행산업은 비용보다 가격이 높게 설정되어 과점이나 독과점의 형태로 운영이 되며, 수익금의 상당부분이 정부에 귀속된다. 해외사례를 보아도 사행산업은 국가가 규제를 하거나, 독점이나 독과점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송상훈 외, 2009). 우리나라의 경우도 합법적 사행산업이 확산됨과 동시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합법적 사행산업들은 환급금을 제외한 순매출액은 세금과 각종 공익사업이나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행산업 과세는 사행산업의 합법화 문제와 더불어, 사행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외지를 반영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소비세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사행산업의 경우는 조세부과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수익금의 대부분이 정부 재정에 귀속되고 있어, 조세의 형태가 아니라도 조세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사행산업에 대한 조세부과는 담배, 주류 등에 부과되는 죄악세의 개념과는 약간 상이한 점이 있다.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국가가 사행산업을 양성화하여 규모를 팽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보다는 음성적인 사행산업을 건전화하고 동시에 이를 국가재정확보에 활용한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사행산업 과세는 비합법적인 도박 산업을 억제하여 건전한 레저문화와 양성화된 도박시장을 형성한다는 점과 도박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점에서 비교적 조세 저항 없는 세원확보의 가능성이 있고, 또 상당한 규모의 사행산업 매출액이 세원으로서 매우 매력적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사행산업은 소비자뿐 아니라 비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외부성과 사회적비용이 존재하게 되므로, 조세를 통하여 사행산업 소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행산업은 비권장재(demerit good)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이 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사행산업 과세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도박행위는 심리, 정신적 질환과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마, 도박 등은 다른 레저 활동에 비해 활동이 없어 비만 등 건강관련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가정, 직장 등 사회적 관계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1)</sup>

하지만, 사행산업에 대한 높은 세율의 과세는 오히려 음성적인 사행산업 시장에서의 불법도박 행위를 부추리게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박의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하며, 세수는 감소할 수 있다. 또한 사행산업의 재정수입 운용을 위한 행정비용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로또복권 재정수입 32센트 징수에는 68센트의 행정비용이 든다는 연구결과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정책 혁신과제, 2005.

가 있다.

한편, 도박행위에 빠지기 쉬운 계층이 주로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가정한다면 사행산업에 대한 조세는 역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실증연구들은 대다수의 도박 관련 조세는 소득 역진적이라고 추정한다(Borg, et al, 1991; Clotfelter et al, 1987; Mikesell et al, 1986; Livemois, 1987; Johnson, 1976; Suits, 1997). Suits(1997)<sup>2)</sup>는 미국의 경우 도박관련 세제는 대체로 역진적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로또의 역진도는 일반적인 소비세보다 상당히 높게 추정되었고, 경마의 역진도는 일반적인 소비세보다는 높으나 상당히 유사하게 추정되었다. Jackson(1994)의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복권 사업에 대한 연구에서는, 초창기에 나타나는 복권 구매형태에 있어 저소득계층이 복권구매에 적극적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는 양상을 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복권 사업의 역진성 문제는 존재하지만 그 정도 면에서는 약해지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sup>3)</sup>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은 도박 관련 조세가 약간 역진적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Warren(1979, 1986)<sup>4)</sup>는 호주의 경우 도박관련 조세가 일반 소비세와 유사한 정도의 소득역진성을 가진다고 추정하고 있다.

### 3. 해외 경마관련 조세 사례

경마관련 조세에 관한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경마관련 조세는 국세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 캐나다, 일본, 브라질의 경우처럼 국세와 지방세로 공유 되고 있기도 하고, 독일, 호주처럼 지방세로만 부과되기도 한다. 영국은 경마에 관한 3개 종류의 세목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마권매출액의 6.7%(1995년)가 GBD로 부과되고, Betting Levy 등이 1.7% 부과되며, 장외 발매액의 8.4%가 원천 징수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경마에 대한 조세부과율은 복권에 대한 조세비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되었다. 프랑스는 초과누진소득세(6.4%), 인지세(3.8%), 부가가치세(2.7%)를 국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전체 마권매출액 대비 12.9%가 조세부과율의 합계이다. 프랑스의 경우 수익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점과 환급금이 가장 많은 비율의 누진소득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여타 국가와 다른 점이다. 아일랜드는 장외매출의 경우에 한해 마권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10%이다. 지방세로만 부과되는 독일은 경마복권세만 부과한다. 명목세율이 16.67%로 높지만, Pari-Mutuel 사업자에게 최고 16%를 되돌려주므로 실질 세부담은 0.67%에 불과하다. 일본은 중앙경마에는 국세를 부과하고, 지방경마에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국세는 제 1국고납부금과

2) Suits, D., "Gambling Taxes: regressivity and revenue potential", National Tax Journal, 30(1): 19~35.

3) Jackson, R., "Demand for Lottery Products in Massachusetts",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Vol.28, No.2, 1994, pp313~325.

4) Warren, N., "Australian tax incidence in 1975-1976", Australian Economic Review 47:19~27, 1979 Changes in Australian tax incidence between 1975~1975 and 1984~1985, Centre for Applied Economic Research, Univ. of NSW, 1986.

법인세에 해당되는 제 2국고납부금이 부과되는 데, 세율은 제 1국고납부금이 10%, 제 2국고납부금이 2~3%이다. 지방경마는 마권발매에 따른 수익의 일정비율이 지방정부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브라질은 지방세(시)인 오락입장세와 국세인 소득세의 두 종류를 부과한다. 오락입장세는 입장료의 10%이고, 소득세는 Concourse라는 고배율 마권의 환급금에 30%의 세율로 부과된다.

한편, 환급금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 브라질 정도가 해당된다. 미국은 30배 이상인 고배율마권에 과세하고 있고, 브라질도 고배율마권에 과세한다. 미국과 브라질의 환급금 소득세율은 우리보다 높지만, 마권세 세율은 우리에게 비해 월등히 낮다.

입장료 과세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마권판매 외에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입장

료가 있는 국가 중에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입장권에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입장료에 부과되는 조세유형은 부가가치세(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가 대부분이다. 브라질의 경우는 오락입장세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육세가 동시에 부과되고 있는 복잡한 구조이다.

#### 4. 결론: 경마, 경정, 경륜 등 사행산업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와 복지재원 조달

경마관련 사행산업 재정정책의 이슈는 경마 산업에 대한 적정세율의 문제, 국세와 지방세간

표 5. 경마관련 세목

국가	국세	지방세(주세 포함)	세율합계(%)
미국	연방소득세	주 Pari-Mutuel tax	2-4
영국	GBD, Betting Levy, Tote Contribution		8.4
프랑스	초과누진소득세, 인지세, 부가가치세		12.9
독일		경마복권세(주)	0.67
이탈리아	공연세		5
아일랜드	마권세		10
캐나다	연방 Pari-Mutuel Tax	주Pari-Mutuel Tax	8.2
호주		주정부 공제	6.75-10
뉴질랜드	Totalizator Duty, GST	Turnover Tax(주)	7.9
일본	제 1국고납부금, 제 2국고납부금	지방경마수입	12-13
홍콩	마권세		12.77
브라질	소득세	오락입장세(주)	1.5
한국	교육세, 농특세, 기타소득세	마권세	18

자료출처: 배준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마산업 비교」(2003).

표 6. 환급금 소득과세와 마권종류별 차등 환급금

국가	환급금 소득세율	마권종류별 차등환급금
미국	\$5,000이상이고, 300배 이상시 28%	있음
영국	없음	없음
프랑스	없음	있음
독일	없음	있음
이탈리아	없음	있음
아일랜드	없음	없음
캐나다	없음	있음
호주	없음	있음
뉴질랜드	없음	있음
일본	없음	있음
홍콩	없음	있음
브라질	Concourse 고배율환급율 30%	n.a.
한국	100배 이상 20%	있음

자료출처: 배준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마산업 비교」(2003).

표 7. 입장료의 유무와 과세여부

국가	입장료 유무	과세 여부
미국	일부 (5cent, 뉴저지주)	없음
영국	있음	없음
프랑스	있음(장외발매)	있음(VAT)
독일	있음	있음(VAT)
이탈리아	있음	있음(VAT)
아일랜드	n.a.	
캐나다	있음	있음(GST, PST)
호주	있음	없음
뉴질랜드	있음(일부0)	없음
일본	있음	있음(VAT)
홍콩	n.a.	
브라질	있음(거의 없음)	있음(오락입장세)
한국	있음	있음(VAT,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료출처: 배준호,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마산업 비교」(2003)

배분문제, 당첨금에 대한 소득세부과 논의, 지방교육세, 농특세, 교육세 등의 목적세 부과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경마 산업을 레저산업으로 보고 적정 세율을 과세하여 육성하느냐, 사행산업으로 보고 높은 세율을 결정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경마는 레저 산업으로만 간주하기에는 도박성이 강하여, 고율 과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고율의 과세를 부과하는 경우, 음성적 시장을 양성한다거나, 마필생산 농가에 피해를 준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정세율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마수요의 적정세율에 관한 이론적 논의에 있어서는, 경마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경마수요가 가격 비탄력적이라면 적정세율은 높게 책정되며, 경마수요가 가격 탄력적이라면 적정세율은 낮게 책정된다.

한편, 우리나라 조세체제의 전반적인 특징이기는 하지만, 사행산업 및 담배, 주류등 외부 불경제 품목에 적용되는 조세체제의 복잡성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 경마, 경륜, 경정, 담배, 주류 등의 세원에는 지방교육세, 농특세, 주민세등의 지방세가 부가세로 붙고, 각 품목에 대하여 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등이 지방세로 부과되는 등 각종 목적세가 부과되어 있다. 경마에 대한 조세도 이러한 조세체제와 유사하여서, 지방교육세, 농특세, 교육세, 주민세 등 각종 목적세가 부과되어 지방교육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등의 세원이 되고 있다.

목적세 부과는 세입과 세출을 연계(eamarking) 함으로서 세수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고, 도박성이 강한 비권장재라는 측면에서의 경마에 대한

목적세를 부과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분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도박의 사회적비용, 외부성 등을 고려할 때도 목적세 부과의 타당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목적세는 주로 지방 재원을 마련하는 목적세로서 부과되는 경향이 있어, 세입과 세출의 직접적 연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조세체계의 복잡성을 유도하며, 재정의 신축적 운영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등이 눈에 띈다. 교육재정을 이들 세원으로부터 충당하는 것도 당위성의 측면에서 문제제기의 소지는 있다. 따라서 경마등 사행산업, 담배, 주류등 외부 불경제 품목들에 대한 현행의 과세체제는 개별 소비세로 통합하던지하여 국고로 환수후 지자체 교부금 및 교육, 복지 재정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조세체제와 세출구조에 관한 급격한 개정을 요구하므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사행산업 재정 규모는 3조원 규모로 매우 크며, 향후 매출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사행산업 관련 재정규모와 세입의 확대로 연결될 것이다. 경마, 로또 등 사행산업과 담배 등은 도박성 및 중독성이 강한 사업으로, 사회적 비용이 상당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며, 건전한 가족관계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영향을 주는 등 외부성이 있는 항목이다. 경마, 로또 등 사행산업의 경우 외부성, 사회적비용, 비권장재 등의 이유로 고율의 조세부과를 통하여 소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세원으로 부터의 세수는 저소득층 지원 및 보건 분야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행 사행산업 재정은 중장기적으로는 세입과 세출구조의 효율적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경마, 경륜, 경정등에 부과되는 레저세를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레저세는 현재 지방세로서, 경마, 경륜, 경정을 통틀어 2008년 기준 약 9800억 원의 규모이며, 60%이상이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레저세는 지방세로서의 존속보다는 국세로 통합한후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

로 보여 진다.

기타 대안으로서는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카지노등 사행산업과 담배, 주류등에 사회보장세를 부과하여 복지재원의 일부로 흡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이는 이들 세원의 외부성, 사회적비용을 감안할 때 그 타당성이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수익을 주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격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고, 기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수혜계층과 부담계층이 동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